

의안번호	2126661
의 퇴 인	홍익표의원
회 답 일	2024. 05.02.
추계번호	24D0252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상임위원 인건비 및 비상임위원 수당, 사무처 직원 인건비, 자문위원 수당, 종합보고서 작성·발간 경비 등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18억 7,100만원, 2025년 40억 1,100만원 등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총 58억 8,200만원(연평균 29억 4,100만원)으로 추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5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2025	합 계	연평균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건비 및 비상임위원 수당(안 제8조 및 제9조)	292	448	740	370
사무처 직원 인건비(안 제17조, 제19조, 제49조)	1,559	3,122	4,681	2,341
자문위원 수당(안 제20조)	20	30	50	25
종합보고서 작성·발간 경비(안 제46조)	0	411	411	206
합계	1,871	4,011	5,882	2,941

- 주: 1.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건비 및 비상임위원 수당은 실제 위원회의 운영 기간 및 개최 횟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2. 조사위원회가 최초로 조사개시결정을 2024년 7월에 하고, 2025년 9월까지 1년 3개월간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각각 장·차관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3. 사무처 직원 인건비는 직원의 정원을 총 60명으로 가정하고 이 중 46명은 별정직으로 채용하고 14명은 국가기관 등에서 파견받는 것으로 가정
 4. 자문위원 수당은 자문위원 수 및 회의개최 횟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함)를 두고, 조사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함	의무규정
2	안 제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및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함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조사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되,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조사활동 완료 후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의무규정
3	안 제17조(조사위원회의 정원 등) 및 제19조(사무처의 설치) 및 제4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사무처는 조사위원회의 간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 간 존속함	의무규정
4	안 제20조(자문기구의 설치)	조사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44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	의무규정
6	안 제46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	의무규정
7	안 제50조(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제5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의무규정

8	안 제54조(지원의 원칙)~안 제64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는 10·29이태원참사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재량규정
9	안 제65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제72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피해자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 추가 진상조사·연구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등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6조(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x	특별조사위원회의 10·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사업비등은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움
2	안 제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및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	
3	안 제17조(조사위원회의 정원 등) 및 제19조(사무처의 설치) 및 제4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	
4	안 제20조(자문기구의 설치)	○	
5	안 제44조(운송비·여비 등)	×	이 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 수를 예측하기 곤란함
6	안 제46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	
7	안 제50조(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제5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등을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으로 추정 곤란함
8	안 제54조(지원의 원칙)~안 제64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	피해자의 수 등을 현시점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워 국가등의 재정적 지원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 곤란함
9	안 제65조(공동체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제72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	공동체 복합시설 및 추모기념관 규모 등을 현시점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상임위원 인건비 및 비상임위원 수당, 사무처 직원 인건비, 자문위원 수당, 종합보고서 작성·발간 경비로 한정하여 추계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
 - 특별조사위원회의 10·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사업비 등은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추계에서 제외하기로 함
- 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으로 함
 - 안 제9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조사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되,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조사활동 완료 후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추계 종료 연도는 2025년(12월)으로 함
 - － 조사위원회가 최초로 조사개시결정을 2024년 7월에 하고, 2025년 9월까지 1년 3개월간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가정
 - － 따라서 위원장 및 위원은 2024년 6개월, 2025년 9개월로 총 1년 3개월을 활동하면서 마지막 3개월 동안 종합보고서를 작성 및 발간하고, 사무처는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 존속하여야 하므로 2025년 12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024.4. 기준, 단위: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소비자물가상승률(CPI)	5.1	3.6	2.6	2.2	2.2	2.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1.4	1.7	2.5	1.9	1.9	1.9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8조)

□ 제정안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장(1명) 및 상임위원(2명)에 대한 인건비(보수 및 기관부담금)를 추계

○ 비상임위원(6명)은 회의참석수당 및 안전검토비 등 수당을 추계

□ 본 추계에서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라 함) 사례를 참고하여 위원장에게는 장관급, 상임위원에게는 차관급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비상임위원에 대한 수당은 월 2회(연 24회) 회의를 개최하며 회당 단가로 3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위원장 보수) 2023년 기준 총 1억 5,919만원

－ 2023년 기준 장관급 보수는 봉급 1억 4,179만원, 정액수당(가족수당) 84만원, 정액급식비 168만원, 직급보조비 1,488만원 등 총 1억 5,919만원임

○ (상임위원 보수) 2023년 기준 총 3억 324만원(1억 5,162만원×2명)

－ 2023년 기준 차관급 보수는 봉급 1억 3,770만원, 정액수당(가족수당) 84만원, 정액급식비 168만원, 직급보조비 1,140만원임

○ (비상임위원 수당) 비상임위원 수(6명)×수당 단가(참석 수당 15만원+안전 검토비 20만원=35만원)×연 24회(월 2회)

□ 추계결과, 조사위원회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2억 9,200만원, 2025년 4억 4,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위원장·상임위원 인건비 및 비상임위원 수당 추계: 2024~2025년

구분	2024	2025
위원장(1명) 인건비(A, 백만원)	92	141
상임위원(2명) 인건비(B, 백만원)	175	269
비상임위원(6명) 수당(C, 백만원)	25	38
추가재정소요(=A+B+C)	292	448

주: 1. 2024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활동하므로 2024년은 6개월, 2025년은 9개월간의 비용이고 인건비와 수당의 경우 위원장은 장관급, 상임위원은 차관급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2. 인건비는 보수 및 기관부담금으로, 기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기관부담 요율 적용
 3. 비상임위원 수당은 회당 35만원으로 가정

나. 조사위원회의 정원 및 사무처의 설치(안 제17조 및 제19조)

□ 제정안은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조사위원회 직원의 정원을 60명으로 가정하고 직원 인건비를 추계
- **(직원 보수)** 5·18조사위 공무원 정원표²⁾를 참고하여 60명 중 46명(77%)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14명(23%)은 국가기관등에서 파견되는 것으로 가정
 - 5·18조사위 공무원 정원표에 따르면, 5·18조사위는 정무직 3명, 별정직 53명, 일반직 14명, 경찰공무원 2명 등 총 73명임
 - 신규 채용하는 별정직(46명) 인건비에 대해 추계하며, 5·18조사위 별정직 1인당 평균 보수(5,640만원)을 준용하고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을 적용

[표 3] 사무처 직원 보수 추계: 2024~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별정직	1인당 평균 보수	30	60
	인원(명)	46	46
	보수	1,380	2,760

주: 조사위원회가 2024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활동하고 사무처는 잔존사무 처리를 위하여 3개월간 존속하므로 2024년은 6개월, 2025년은 12개월간의 비용이고, 별정직 보수는 5·18조사위 1인당 평균 보수를 적용

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은 2024년 1억 7,900만원, 2025년 3억 6,200만원으로 추정
 - － 앞서 추계된 보수 총액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기관부담금 요율을 곱하여 연도별 기관부담금 추계

[표 4] 기관부담금 추계: 2024~2025년

(단위: 백만원)

	2024	2025
기관부담금	179	362

- 추계결과, 조사위원회에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 60명 이내의 사무처를 두는 경우, 직원 인건비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15억 5,900만원, 2025년 31억 2,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조사위원회 사무처 설치에 따른 직원 인건비 추계: 2024~2025년

	2024	2025
사무처 직원 보수(A, 백만원)	1,380	2,760
기관부담금(B, 백만원)	179	362
추가재정소요(=A+B)	1,559	3,122

다. 자문기구의 설치(안 제20조)

- 제정안은 조사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자문위원 정수와 회의 횟수 등을 준용하여 총 40명의 자문위원을 두고 분기 당 1회 개최(2024년 2회, 2025년 3회) 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수당 지급단가는 회당 25만원으로 가정하여 추계
- 추계결과, 조사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자문기구를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2,000만원, 2025년 3,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자문기구 설치에 따른 자문수당 추계: 2024~2025년

(단위: 백만원)

	2024	2025
자문수당	20	30

라.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안 제46조)

□ 제정안은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에 따른 종합보고서 등 발간 비용(3억 7,800만원)을 준용하고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

○ 종합보고서는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마지막 해인 2025년에 발간

□ 추계결과, 조사위원회가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4억 1,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발간 비용 추계: 2025년

(단위: 백만원)

	2024	2025
종합보고서 발간 비용	0	411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유사사례로 5·18조사위 등의 운영 현황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의 운영 기간 및 개최 횟수에 따라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한예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한예슬	02-6788-4831	yeseulhan@assembly.go.kr